

# 세액공제신청서

※ 제3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3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	------	----

1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	

(전화번호: )

2	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	-------	---------

3 신청 내용	6 구 분	7 근거법령	8 코드	9 공제율	10 대상세액	11 공제세액
10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		영 제4조제8항 (2021.2.17.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31			
10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	영 제6조의4제4항	14Z			
103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		영 제7조의2제4항	14M			
104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		영 제7조의2제8항	18D			
105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		영 제7조의2제12항	18L			
106 교육기관 무상 기증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		영 제7조의2제16항	18R			
107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대상)		영 제9조제14항	13L			
108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대상)		영 제9조제14항	10E			
109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대상)		영 제9조제14항	13M			
110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제외)		영 제9조제14항	16A			
11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제외)		영 제9조제14항	10D			
112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제외)		영 제9조제14항	16B			
113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		영 제11조제6항	176			
114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		영 제11조의3제14항	14T			
115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		영 제11조의4제12항	14U			
116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	영 제12조의2제5항	18E			
117 소재·부품·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		영 제12조의3제15항	18N			
118 소재·부품·장비 외국법인 등 인수 세액공제		영 제12조의3제15항	18P			
119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		영 제17조제5항	18H			
120 통합투자세액공제(일반)		영 제21조제13항	13W			
121 통합투자세액공제(신성장사업화시설)		영 제21조제13항	13X			
122 통합투자세액공제(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)		영 제21조제13항	13Y			
123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(일반)		영 제21조제13항	1B1			
124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(신성장사업화시설)		영 제21조제13항	1B2			
125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(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)		영 제21조제13항	1B3			
126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		영 제22조의11제7항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8I			
127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		영 제22조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34			
128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		영 제22조의2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77			
129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		영 제22조의3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A			
130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		영 제22조의4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2			
131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		영 제22조의5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36			

⑥ 구 분	⑦ 근거법령	⑧ 코드	⑨ 공제율	⑩ 대상세액	⑪ 공제세액
⑬②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6 (2021. 2. 17.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35			
⑬③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8 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B			
⑬④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9 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8B			
⑬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(기본공제)	영 제22조의10제6항	18C			
⑬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(추가공제)	영 제22조의10제6항	1B8			
⑬⑦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2조의11제5항	1B7			
⑬⑧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	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	14N			
⑬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2제3항	14S			
⑭①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	영 제26조의3제6항	14X			
⑭①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	영 제26조의3제6항	18J			
⑭②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4제17항	14Y			
⑭③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5제11항	18A			
⑭④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7제10항	18F			
⑭⑤ 통합고용세액공제	영 제26조의8제11항	18S			
⑭⑥ 통합고용세액공제(정규직 전환)	영 제26조의8제11항	1B4			
⑭⑦ 통합고용세액공제(육아휴직 복귀)	영 제26조의8제11항	1B5			
⑭⑧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7조의3제3항	18K			
⑭⑨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	법 제30조의2제4항 (2022. 12. 31.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H			
⑮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	법 제30조의4제5항	14Q			
⑮①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	법 제30조의4제5항	18G			
⑮② 상환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96조의3제8항	10B			
⑮③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99조의11제4항	18Q			
⑮④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(납세의무자)	영 제104조의5제6항	184			
⑮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(세무법인)	영 제104조의5제6항	14J			
⑮⑥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14제2항	14E			
⑮⑦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	영 제104조의15제6항	1B6			
⑮⑧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20제5항	140			
⑮⑨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22제3항	14P			
⑮⑩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	법 제104조의18제1항 (2020. 12. 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I			
⑮⑪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	법 제104조의18제2항 (2020. 12. 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K			
⑮⑫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	법 제104조의18제4항 (2020. 12. 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R			
⑮⑬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27제3항	18M			
⑮⑭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29제2항	10C			
⑮⑮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17조의4제4항	14W			
⑮⑯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	법 제126조의7제13항	14V			
⑮⑰ 세액공제 합계		1A3			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1.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,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.
2.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.
3. ⑩ 대상세액란: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.
4. ⑪ 공제세액란: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5.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6.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에 별도로 적습니다.
7. ⑦ 근거법령란에서 ‘법’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‘령’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을 뜻합니다.